

## 1. 개정이유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검진 시기를 결핵 검진과 마찬가지로 채용 후 1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또한, 잠복결핵감염검진에 사용되는 면역학적 검사는 결핵·잠복결핵 감염 치료력이 있는 자, 이전 검사상 양성이었던 자에게 시행하는 것이 권고되지 않으므로 이를 결핵 관련 병력과 증상에 대한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는 단서를 포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검진 시기 명확화

- 신규채용자의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은 각각 신규채용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할 것을 규정함

나. 잠복결핵감염검진 방법

- 면역학적 검사 실시 대상 중 결핵·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는 경우, 이전 검사상 양성이었던 경우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음을 규정함

다. 용어 통일

-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호가목과 같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통일하여 규정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채용(결핵검진의 경우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등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한다.

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 다만, 결핵·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는 경우, 이전 면역학적 검사 상 잠복결핵감염 양성이었던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의2제1항의제2호 중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결핵검

진등”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학교 등에  
근무 중이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 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단서 신설>                                                       |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 방법) ① -----<br>---- <u>결핵검진등</u> -----<br>-----<br>-----<br>-----<br>. 다만, 신규채용( <u>결핵검진의 경우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u> 이하 같다)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등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이 경우 신규채용(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 ② -----<br>---- <u>결핵검진등</u> -----                                                                                                                                                                                                 |

검진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 실시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2(준수사항)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3. 4. (생 략)

② ③ (생 략)

-----  
-----.

1. (현행과 같음)

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 다만, 결핵·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는 경우, 이전 면역학적 검사 상 잠복결핵감염 양성이었던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다.

③ -----  
----- 결핵검진등 -----  
-----  
-----  
-----.

제4조의2(준수사항)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결핵검진등

3. 4.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
|-------------|------------------|
| 연 락 처       | (043) 719 - 7326 |